

의안번호	2218420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6.9.2.
추 계 번호	26D22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95억 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95억 9,800만원(연평균 199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제14조)	19,508	19,206	19,740	20,289	20,855	99,598	19,920

주: 본 추계 결과는 전입 및 신규증원 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 및 신규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 ¹⁾ 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15조의2 (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사항 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5.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6.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의무규정

1) 법무부는 기관 명칭을 ‘소년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하여 추진 중인 바 ‘소년보호전문기관’이라 칭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	-
	안 제15조의2 (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일반직 국가공무원 161명의 증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건비(보수, 기관 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및 사무공간 임차비용에 한정하여 추계
 - 법무부는 전국 18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소년보호전문기관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은 법무부 내에서 이관되는 것으로 전제함
 -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보호관찰소에서 225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141명 등 총 366명이 재배치될 계획이며, 증원인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직급별 증원(안)을 참고하여 추계함

[표 2]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에 따른 직급별 증원(안)

						(단위: 명)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증원	45	23	33	32	28	161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사무실은 전입 인원과 신규 인원에 필요한 면적만큼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와 임차료를 추계
 - 법무부는 기존의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 5개 센터는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11개 센터는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센터별 공사비 등 상세내역을 알기 어려우므로, 기존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원(141명) 외 전입 인원과 신규 인원에 필요한 사무공간 면적만큼 추가로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3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 (보수) 증원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2026년 법무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1인당 보수를 산출

[표 3] 2026년 증원인원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5급	86,137	5,400	3,000	1,920	480	91,537
6급	67,148	4,620	2,220	1,920	480	71,768
7급	65,183	4,560	2,160	1,920	480	69,743
8급	48,484	4,500	2,100	1,920	480	52,984
9급	38,212	4,500	2,100	1,920	480	42,712

주: 1.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2.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법무부 202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6.3.)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기관부담금 요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수총액) 산출된 1인당 보수에 증원인원 수를 곱하고 공무원임금상승율을 적용

[표 4] 보수 총액: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총액 (=직급별 1인당 보수×인원)	5급	45명	4,243	4,370	4,501	4,636	4,775	22,525
	6급	23명	1,700	1,751	1,804	1,858	1,914	9,027
	7급	33명	2,371	2,442	2,515	2,590	2,668	12,586
	8급	32명	1,746	1,799	1,853	1,908	1,966	9,272
	9급	28명	1,232	1,269	1,307	1,346	1,386	6,540
합계			11,292	11,630	11,979	12,339	12,709	59,949

주: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

[표 5]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관부담금	1,482	1,534	1,591	1,651	1,713	7,9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로 인한 추가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79억 2,100만원으로 추계

[표 6]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인건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11,292	11,630	11,979	12,339	12,709	59,949
기관부담금	1,482	1,534	1,591	1,651	1,713	7,972
합계	12,774	13,165	13,571	13,989	14,421	67,921

주: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본경비

- 법무부의 2026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13%³⁾를 앞서 추정된 인건비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 산출
- 추계 결과, 기본경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6억 7,500만원으로 추계

[표 7] 기본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경비	692	713	734	756	779	3,6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산취득비

-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로 인한 증원 인원 161명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5,078천원)를 적용하여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7년에만 발생하며 8억 1,800만원으로 추계

[표 8] 자산취득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818	-	-	-	-	8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임차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소년보호전문기관의 사무공간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공간 등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추계함
 -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재 총 인원은 141명이므로, 추가되는 인원인 386명⁴⁾이 1인당 39m²⁵⁾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면적당 월 임차료

3) 법무부 2026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를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4) 보호관찰소에서 재배치 되는 225명, 증원 161명

18,900원/m²⁶)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간 임차료를 산출

○ 관리비는 임차료 대비 관리비 비율을 50%로 가정하여 산출

□ 소년보호전문기관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7년 46억 1,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35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소년보호전문기관 임차료 및 관리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임차료	3,483	3,552	3,623	3,696	3,770	18,123
관리비	1,741	1,776	1,812	1,848	1,885	9,062
합계	5,224	5,328	5,435	5,544	5,654	27,185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95억 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95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인건비	12,774	13,165	13,571	13,989	14,421	67,921	13,584
기본경비	692	713	734	756	779	3,675	735
자산취득비	818	—	—	—	—	818	164
임차료 등	5,224	5,328	5,435	5,544	5,654	27,185	4,709
합계	19,508	19,206	19,740	20,289	20,855	99,598	19,920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의 기관유형별, 청사유형별 1인당 평균 업무용 면적 참고(임차면적 산출 시 적용)

6)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의 '상권별 오피스 임대료'(2026년 2분기 기준) 참고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전입 및 신규증원 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 및 신규증원 인원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